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1187 호 2019. 8. 1.(목)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0호[하천 점용 허가 고시]..... 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1호[울산광역시 북구(농소3동)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]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-183호[소하천 준공인가 고시]..... 3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</li> <li>☞ 북구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bukgu.ulsan.kr">www.bukgu.ulsan.kr</a>) → 구정소식 → 알림마당 → 북구공보</li> </ul>
-----	---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기획홍보실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80호

# 하천 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**1. 하천의 명칭**

동 천

**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**

가. 성명 :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명촌 23길 8

**3. 점용 목적 및 개요**

공작물의 설치(전주)

**4.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**

가. 위치 : 천곡동 1020-1번지 외 필지

나. 면적 : 1.568㎡

**5.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**

일시 : 2019. 8. 7. ~ 2019. 9. 6.

영구 : 2019. 9. 7. ~ 2023. 12. 31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- 181호

# 울산광역시 북구(농소3동)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1.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

### 2. 농소3동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내역

(단위:m<sup>2</sup>)

구분	행정구역 면적	축종별 거리제한 지역					
		합계	가축사육제한 (100m미만)	100m이상 250m미만	250m이상 500m미만	500m이상 800m미만	800m이상 1000m미만
농소3동	31,100,015	29,422,757	9,032,986	6,420,468	7,408,112	4,974,918	1,586,273

※ 축종별 거리제한 : 소 100m, 젓소 250m, 양·말·시슴 500m, 돼지 800m, 닭·오리·개·메추리 1,000m

### 3.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
-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(KLIS) 등재

※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/web/index.jsp>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###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(☎052-241-7773)로 문의

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- 183호

## 소하천 준공인가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하천정비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#### 1. 소하천정비 개요

가.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 : 제2울동천 (양정동 779번지 일원)

나. 착공 및 준공 연월일

착공 : 2019. 05. 22.

준공 : 2019. 07. 3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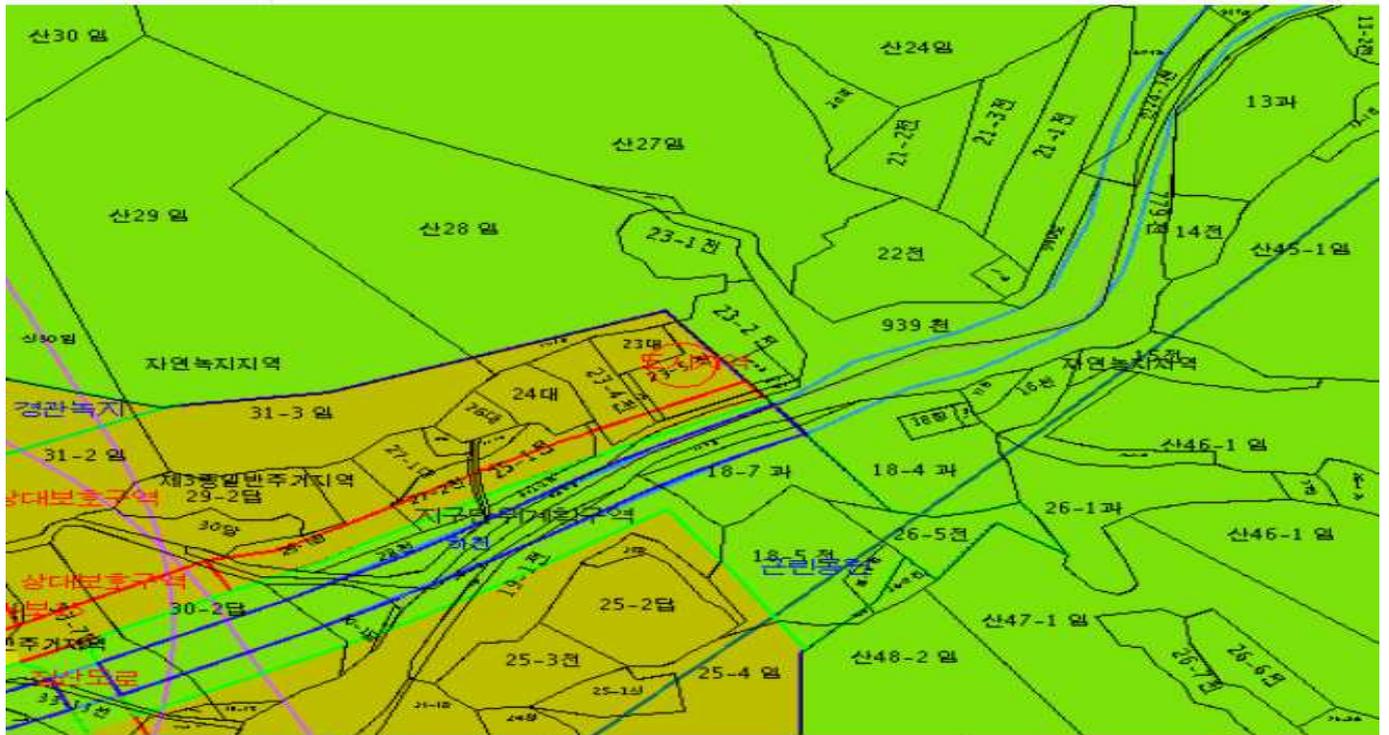
#### 2.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

울산도시공사 대표 성인수

#### 3.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대장면적(㎡)	점용면적(㎡)
북구 양정동	776번지	천	4,851	173

#### 4.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



범례

축척변경

인쇄

- 도시지역
- 제2종일반주거지역
- 제3종일반주거지역
- 자연녹지지역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장애물제한표면구역
- 소하천구역
- 상대보호구역
- 개발제한구역
- 보행자전용도로

축척 1 / 2400

인쇄

### 5.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- 가. 집중호우 예상 시, 현장 위험요소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피해보상 하여야 합니다.
- 나. 하천개수를 위한 하천공사 및 도로확장공사 등 국가계획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 시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, 해당 공작물의 이설 또는 철거가 요구될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다. 본 허가에 따른 구조물은 허가목적외로만 사용가능 하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. 이를 위반할 시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점용·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, 해당 인공구조물의 이전·제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그 외 사항은 『소하천정비법』에 의합니다.